

신한종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코드 : 61130]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을</u> 감안하여 <u>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u> |
|------------------------|----------|----------------|----------|----------|----------------|--|
| 1 | 2 | 3 | 4 | 5 | 6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u>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u>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원본 손실 위험, 시장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u>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이 요약정보는 신한종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1)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매출액, 현금흐름, 자기자본, 배당 등 펀더멘탈(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주가지수인 펀더멘탈 인덱스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비교지수 : KOSPI200지수*10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 투자전략 | | | | 투자비중 |
|--------------------------|--|--|--|--|--------|
| 신한종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매출액, 현금흐름, 자기자본, 배당 등 펀더멘탈(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주가지수인 펀더멘탈 인덱스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 | | 90% 이상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 | | | | | | | | | |
|-----------------|--|---------------------------------|--------|--------|----------|---|-----|-----|-----|-------|-------|
|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투자비용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0% | 0.8300 | 0.4000 | 1.3700 | 0.8320 | 184 | 272 | 363 | 557 | 1,116 |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1) | 없음 | 1.4300 | 1.0000 | 1.5800 | 1.4322 | 146 | 297 | 453 | 782 | 1,712 |

| 클래스 종류 |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 | | | |
| 투자비용 |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0% 이내 | 0.6300 | 0.2000 | 1.0100 | 0.6304 | 114 | 181 | 251 | 400 | 832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 없음 | 0.9300 | 0.5000 | 1.1900 | 0.9322 | 95 | 194 | 297 | 516 | 1,144 | | | | | | |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자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0004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근1년 | | 최근2년 | | 최근3년 | | 최근5년 | | 설정일 이후 | | | | | | | | |
| | | 2022.11.01 ~ 2023.10.31 | | 2021.11.01 ~ 2023.10.31 | | 2020.11.01 ~ 2023.10.31 | | 2018.11.01 ~ 2023.10.31 | | | | | | | | | | |
|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 7.25 | | -5.34 | | 6.90 | | 6.61 | | 4.34 | | | | | | | | |
| |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 7.47 | | -5.13 | | 7.12 | | 6.83 | | 4.69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1) | 6.62 | | -5.91 | | 6.27 | | 5.98 | | 5.14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 7.14 | | -5.43 | | 6.80 | | 6.50 | | 4.81 | | | | | | | | |
| | 비교지수(%) | 2.00 | | -11.31 | | 0.44 | | 2.96 | | 3.31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14.60 | | 14.66 | | 18.36 | | 21.13 | | 19.69 | | | | | | | | |
| (주1) 비교지수 : 2006.10.16 이후 : KOSPI200지수*100% | | | | | | | | | | | | | | | | | | |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주7)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신한종은아침펀더멘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3.10.31 현재) | | | | | | | | | | | | | | | | | | |
|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 | 전형래 | 1987 | 책임운용역 | 18개 | 2,706억원 | | 최근1년 7.49% | 최근2년 -5.14% | 최근1년 4.16% | 최근2년 -8.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퀸트운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퀸트운용센터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 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주요 투자 위험 |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
| |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 | 시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매입방법 | 가. 15시30분 이전: 제2영업일 (D+1)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 | |
| 환매방법 | 가. 15시30분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나. 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 |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기준 가격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집합투자 업자 |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 | |
| 모집(판매)기 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모집(매출)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23년 11월 23일 | 존속 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수수료미징 구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8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온라인슈퍼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PR)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기타 | 랩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고액,기관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